

의붓딸 성폭행사건 공소기각

성폭력특별법 헛점 또 드러나

재판부 '친족범위 아니다' 친고죄 적용 안해 여성계 '법제정 취지 무색한 판결', 개정운동 천명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인 이번 판결은 친족성폭력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제정에 급급해 충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특별법의 헛점만 부각시킨 셈이 되었다. 사진은 93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여성계 대표들.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해도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성폭력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44)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사실상 존속 또는 친족관계(4촌 이내)에 있는 연장자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별법 제7조4항은 그러나 의붓딸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딸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조 씨를 고소한 어머니가 소를 취하하였기에 기소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씨는 대법

아버지 권위 이용한 범죄에 무방비 피해자 보호 취지에도 위배

원 판결 이후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상태에 있던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0)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93년 국회에서 의붓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친족성폭력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어서 피해의 횡수가 빈번할 뿐 아니라 특히 가해자가 친부이든, 양부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절

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 가해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 피해시기가 대체로 피해자가 어린 9살경부터 시작돼 가해자의 성폭력에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상태에 놓인다는 점, 설사 어머니가 알더라도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가 십여년씩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친족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설치한 것은 바로 친족성폭력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상담소는 또 "판결은 특별법 제7조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혈연관계로 국한시킴으로써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을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정신을 근거로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의 배경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과할 뿐 아니라 이를 위배

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상담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 여성들의 인권회복마저 법적으로 통제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실관계로 살아가는 의붓아버지와 딸간의 관계에서 반인륜적 성폭력이 자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측의 입만 봉해 버린다면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아 피해여성들을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인 이번 판결은 친족성폭력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제정에 급급해 충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특별법의 헛점만 부각시킨 셈이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여성계는 특별법에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자기결정 침해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친고죄 폐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곧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사례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16.7%에 이르며, 이중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 28.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정미 기자)